

우리나라 商標法の 主要 内容

商標는 商品 및 企業의 얼굴... 企業戰略의 必

(3) 不登錄事由

商標가 構成이 明瞭하고 世人들의 注意를 끌 수 있는 自他商品의 識別力이 있어 特別顯著한 標章으로서 登錄要件(商標法 第8條)을 갖추고 있다 하여도 그 商標를 國際의 信義와 國家등의 公益을 위하고 私益의 調和를 이루게 하는 理由로 다음의 不登錄事由에 該當할 경우는 登錄을 認定하지 아니하고 있다(商標法 第9條 1項).

① 國旗·國章·軍旗·勳章·褒章·記章 外國의 國旗 및 國章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와 赤十字·올림픽 또는 著名한 國際機關의 稱號나 標章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商標法 第9條 1項 1號)

① 國旗나 國章 등 이와 같은 稱號나 標章은 어떠한 個人의 利益에 關한 私益이 아니고 國家 또는 公共의 利益과 國際機關등 標章의 權威를 존중하여 이를 保護하는데 있다고 解釋된다.

② 「國旗」라 함은 나라를 表象하는 旗로서 太極旗요 「國章」은 國家의 權威를 表示하는 徽章이고 「軍旗」는 陸海空軍旗와 單位部隊의 旗이며 「勳章」과 「褒章」은 國家에서 功勞가 있는 자에게 法律의 規定에 依하여 수여하는 것이다. 「外國의 國旗와 國章」은 그 나라를 表象하는 旗와 標章이요 「赤十字·올림픽의 稱號나 標章」은 赤十字旗나 그 稱號와 올림픽의 마크나 그 稱號이고 「國際機關의 稱號나 標章」은 國際機關들이 使用하는 名稱인 稱號와 旗 그리고 標章을 말한다.

③ 이와 같은 標章은 商標의 一部에 國旗·國章등과 同一 또는 類似한 圖形을 結合하거나 國際機關을 表示하는 稱號 및 標章과 同一 또는 類似한 경우 그리고 무궁화 모양으로 된 政府機關의 문장과 同一 또는 類

似한 것은 登錄할 수 없으며 國旗·勳章 또는 褒章은 現在 存在하는 것에 限하여 不登錄事由에 該當된다.

④ 大法院判例를 보면 「勳章과 商標」에 있어서 무궁화 大勳章 自體와 무궁화 圖形의 商標는 非類似의 것이며(1963.3.21 大法院 判例), 國旗와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인가의 與否에 있어서 本願商標의 半달商標의 色彩가 上部分이 赤色, 下部分이 青色이라는 事實만으로 太極圖形과 同一한 인상을 준다고 할 수 없고 上部分의 半달 橫書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國旗의 太極圖形과 類似한 圖形이라고 하기 어렵다(1971.11.30 大法院 判例).

② 國家·民族·公益團體·宗教 또는 著名한 故人과의 關係를 虛僞로 表示하거나 이를 誹謗 또는 모욕하거나 惡評을 받게 할 念慮가 있는 商標(商標法 第9條 1項 2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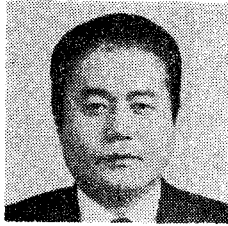
① 우리나라 등의 統治權·領土·國民의 三要素로 成立되는 「國家」와 단군민족·백의민족 등 韓民族과 같이 生活양식이나 文化, 遺産과 言語에 의한 假의 「民族」, 그리고 公益을 위하여 設立된 法人格을 가진 非營利의 公益團體와 憲法秩序內에서 認定되는 모든 「宗教」 또는 人士와 作家등 이름이 들어난 「著名한 故人」과의 關係를 眞實에 어긋나게 「虛僞」로 表示하거나 社會的 評價를 害될 정도로 남을 헐어서 욕하는 「誹謗」 또는 虛僞는 眞實의 事實이든 사람을 무시하여 욕되게 하는 「侮辱」을 하거나 남을 나쁘게 비평하는 「惡評」을 받게 할 念慮가 있는 商標는 不登錄事由에 該當된다는 것이다.

② 여기에서 虛僞로 表示하거나 이를 誹謗 또는 모욕하거나 惡評을 받게 할 念慮의 與否는 商標自體는 물론 去來社會의 實情을 考慮하도록 되어 있다.

③ 이 規定은 國家社會의 公益이나 道德觀念의 維持

解説 (5)

要件



金 寬 衡
〈本會 研修部長〉

라는 公益性保障의 側面에서 不登錄케 하는 것으로 生覺되며 이들 標章이 人類社會의 道德이나 公益에 벗어나는 虛偽, 誹謗, 侮辱, 惡評의 念慮가 되는 것에 該當이 될 경우만 登錄할 수 없고 이런 念慮가 되지 않을 程度의 標章은 그 構成이나 觀念, 外觀, 稱號를 綜合的으로 觀察하여 보고 商標를 使用할 指定商品의 關係도 品目別로 考慮해서 需要者나 一般社會 通念上 나쁜 영향이 미칠 念慮가 없을 경우에는 登錄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生覺된다.

③ 國家·地方 公共團體 또는 이들의 機關과 公益團體로서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公益事業으로서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을 表示하는 標章으로서 著名한 것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 다만 國家·地方公共團體 또는 이들의 機關과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公益團體나 公益事業團體에서 그의 業務表章에 關한 登錄出願을 할 때에는 例外로 한다(商標法 第9條 1項 3號).

① 國家나 地方公共團體와 非營利公益團體를 國益과 公益의 側面에서 保護하기 위하여 一般人등은 登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② 當該機關이 業務를 遂行하는데 必要한 業務標章은 國家나 公益機關의 効率의인 成果를 거둘 수 있게 그 機關에서는 登錄을 하도록 認定하는 것으로 解釋된다.

③ 이 規定에서 非營利 公益機關이나 團體의 著名한 學校名·宗教團體, 市·道·YMCA·보이스카우트 등을 表示하는 標章과 同一 또는 類似한 標章은 이 規定에 該當하여 一般人등이 登錄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의 目次

(3) 不登錄事由

2. 商標와 商品의 同一類似

〈다음號에 繼續〉

④ 公共의 秩序 또는 善良한 風俗을 紊亂하게 할 念慮가 있는 商標(商標法 第9條 1項 4號)

① 商標가 外觀의 모양이나 稱號를 부를 때와 그 觀念의 뜻에 있어 公序良俗에 反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害치는 標章일 경우는 構成이 明瞭하고 自他商品의 識別力이 있어도 國家社會의 道德觀念이나 規範意識 또는 社會 通念에 따라 登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② 商標의 構成自體가 과격한 文字나 저속한 圖形등으로 된 경우 또는 商標의 構成自體는 그리하지 아니하여도 指定商品에 使用하므로써 社會 公共의 利益에 反하거나 社會의 倫理 및 道德觀念에 反하는 경우 및 需要者에게 혐오감을 주는 商標도 不登錄事由에 該當된다.

③ 商標에 있어 他法律에 의하여 使用등이 禁止되어 있는 標章이나 一般的으로 國際信義에 위배되는 標章도 登錄할 수 없다.

⑤ 政府에서 開設하거나 政府의 認可를 받아 開設하는 博覽會 또는 外國政府에서 開設하거나 外國政府의 認可를 받아 開設하는 博覽會의 賞牌·賞狀 또는 褒章과 同一 또는 類似한 標章이 있는 商標. 다만, 그 賞牌·賞狀 또는 褒章을 받은 者가 그 商標의 一部로서 標章을 使用할 때에는 例外로 한다(商標法 第9條 1項 5號).

① 博覽會의 賞牌·賞狀 또는 褒章의 權威를 유지하고 出品物의 品質에 대한 他商品과의 誤認混同을 防止하기 위한 것이며 博覽會의 賞은 그 商品의 品質이나

効能이 優秀함을 表彰하기 위하여 授與되는 것이므로 이 賞牌나 賞狀등과 同一 또는 類似한 標章을 全部 또는 一部를 商標에 包含시키는 것은 登錄할 수 없는 것이다.

㉔ 이러한 標章에 該當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商標가 品質保證의 機能을 가질 때에는 商品의 品質誤認關係를 考慮하여 登錄與否가 決定되어야 할 것이다(商標法 第9條 1項 11號).

⑥ 著名한 他人의 姓名·名稱 또는 商號·肖像·署名·印章·雅號·藝名·筆名 또는 이들의 略稱을 包含하는 商標. 다만 그 他人의 承諾을 얻은 경우에는 例外로 한다(商標法 第9條 1項 6號).

㉕ 他人의 姓名이나 商號등을 商標로 使用하게 되면 그 사람의 名譽와 信用을 害할 우려가 있고 他人의 人格을 侵害하는 結果가 되므로 私人의 人格權인 私益을 保護하는데 目的이 있다.

㉖ 自然人的 「姓名」과 商人이 營業上 自己를 表示하는 法人등의 이름인 「商號」 또는 一般的으로 부르는 이름·稱號·名義로서의 「名稱」·사람의 容貌를 꼭 같게 그린 그림이나 새긴 彫刻인 「肖像」·權限있는 著者書類에 直接 姓名을 기재하여 싸인을 하는 「署名」·圖章인 「印章」·藝術家등이 본 이름의에 別途로 지어 부르는 「雅號」·藝術人的 本名이 아닌 이름의 「藝名」·作家들이 本名 以外로 使用하는 이름인 「筆名」과 이들의 略稱을 包含하는 商標는 不登錄事由에 該當된다.

㉗ 著名한 他人이라 함은 著名한 個人과 法人을 말하며 名稱과 商號는 公益團體(商標法 第9條 1項 3號)에 包含되지 않는 모든 團體와 商號 또는 名稱 그리고 이들의 略稱이 該當된다.

㉘ 人格權인 私益을 保護하기 위해서 著名한 他人의 姓名·名稱등은 登錄할 수 없으나 本人의 承諾을 얻은 경우에는 登錄을 認定하고 있으며 비록 登錄이 되어도 自己 本人에게는 商標權의 效力이 미치지 아니한다(商標法 第26條 1項).

⑦ 先出願에 의한 他人의 登錄商標와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로서 그 登錄商標의 指定商品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品에 使用하는 商標(商標法 第9條 1項 7號)

商標는 登錄에 의하여 獨占排他權을 갖게 되므로 이 已 登錄된 商標와 同一 하거나 類似한 商標를 그 登錄商標에 使用할 指定商品과 同一 하거나 類似한 商品에 使用하기 위한 他人의 後出願商標는 登錄을 認定하지 아니한다 만일 登錄商標와 商標가 同一 또는 類似한 他人의 後出願商標登錄을 認定한다면 同一 類似하고 權利者가 다른 여러사람들의 數個商標가 重復으로 무수히 登錄될 수 있기 때문에 需要者들이 自己商品의 識別을 할 수 없어 商品出處의 誤認混同을 이르게서 流通秩序를 저해하게 되므로 商標法의 本質과 目的에 反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대한 具體的인 內容은 뒤에 別途 說明기로 한다.

⑧ 商標權이 消滅한 날로부터 또는 商標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있었을 때에는 그의 確定日로부터 1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他人의 商標와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로서 그 指定商品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에 使用하는 商標, 다만, 他人의 商標權이 登錄失效日前 1年以上 使用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商標法 第9條 1項 8號)

㉙ 登錄商標를 오래동안 指定商品에 使用하게 되면 需要者들이 그 商標가 누구의 것이며 品質이 어떠한지를 알게되어 商品의 信用이 축적됨에 따라 消滅한 후 他人이 그 商標를 使用하게 될 경우 消滅前商標權者의 商品으로 誤認 購買하게 되기 때문에 商品의 品質이 저조하거나 터무니없이 高價일 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欺瞞당할 念慮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防止하기 위하여 消滅 또는 無效審決이 確定된후 1年이 經過하여야 他人出願의 登錄을 認定하는 것이다.

㉚ 原商標權者가 商標權의 消滅日前에 이미 1年以上 使用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商標權이 消滅한 날로부터 1年以內라도 그 商標의 商品이 市場에 없어서 需要者들이 欺瞞당할 念慮가 없을것으로 보아 他人의 登錄을 認定할 수 있다고 生覺된다.

㉛ 商標權의 消滅後 1年間의 空白을두고 他人商標登錄을 認定하는 것은 需要者들이 一年程度의 期間이 지나면 消滅前 商標가 記憶에서 망각될것으로 보아서 비록 他人의 同一商標가 流通되어도 商標權者가 變更된 것을 認識할 수 있어, 商品出處의 混同이 없다는

취지로 解釋된다.

㉔ 「商標登錄의 失效 또는 消滅」이라함은 存續期間의 滿了·拋棄로 因한 登錄의 抹消 營業의 廢止·登錄의 取消 또는 無效의 確定을 말한다.

㉕ 他人의 商標權登錄 失效日前 1年以上 使用하지 아니 하였을때를 除外 하고는 登錄失效 또는 消滅日부터 1年內의 期間안에 商標權者의 商標登錄 出願이 없을 때에도 原商標權者가 아닌 他人의 商標登錄 出願은 査定時期에 不拘하고 出願日字를 基準으로 하여 登錄할 수 없다.

㉖ 登錄商標의 失效日로부터 1年以內의 期間안에 原商標權者가 아닌 他人의 先出願이 있을 때에는 그 先願에 對한 拒絕査定 通知를 하기 前이라도 後願인 商標權者의 商標登錄 出願을 登錄査定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㉗ 他人의 商標權이 登錄失效日前 1年以上 使用하지 아니 하였을때의 경우 商標權者 自身이 登錄抹消後 登錄失效 또는 消滅以前 1年以上 不使用 하였음을 是認한 證據書面(本人 印鑑證明添附)을 提出 하거나 商標權者가 登錄商標의 指定商品에 對한 營業을 廢止 하였을때와 商標權者가 死亡한 날로부터 1年 以內에 相續人이 그 商標의 移轉登錄을 하지 아니하였을때(商標法第34條)에 該當하여 1年 以上이 초과 되었음을 認定하는 書面을 提出 하였을 때에는 登錄을 認定하고 있다.

㉘ 他人의 商品을 表示하는 것이라고 需要者間에 顯著하게 認識되어 있는 商標와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로서 그의 商品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品에 使用하는 商標(商標法第9條1項9號)

商標를 使用한 結果 需要者間에 널리 顯著하게 認識되어 그 商標의 商品이 特定人의 것이라고 알 수 있을 程度인 「周知」商標는 他人이 登錄을 받을 수 없다. 이와같은 周知商標를 本人이 登錄을 하지 아니 하였어도 需要者들에게 使用에 依한 信用이 蓄積되어 特別顯著한 商標이기 때문에 이를 保護하여 商品의 誤認混同을 防止하기 위하여 他人의 登錄을 認定하지 아니한다. 이 周知商標는 商標를 어느 商品에 使用하여도 出處의 誤認混同이 을 程度의 著名商標가 되기 以前段階의 商標로 볼 수 있다고 生覺된다. 具體的인 內容은 뒤에 周知著名商標에서 說明키로 한다.

㉙ 需要者間에 顯著하게 認識되어 있는

他人의 商品이나 營業과 混同을 일으키게 할 念慮가 있는 商標(商標法第9條1項10號)

商標를 多年間에 걸쳐 오래동안 使用한 結果 그 商標의 商品에 對하여 一般需要者들間에 全國等 광범위한 地域에 널리 顯著하게 認識되어서 그 商品을 認定받아 信用이 蓄積擴大됨에 따라 商標가 化體되어 「著名」하여 저서 이와 同一類似한 商標를 他人이 어떤 모든 商品에 使用 하여도 特定人의 著名商標商品으로 誤認混同을 일으킬 수 있는 商標는 登錄을 認定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著名商標는 登錄을 하거나 未登錄狀態에서도 登錄된 指定商品과 同一類似한 商品뿐만 아니라 다른 계통의 非類似한 全體商品과 企業까지도 混同이 되는 商品이나 營業의 混同을 일으킬 念慮가 있는 商標를 말하는 것으로 解釋된다. 具體的인 內容은 뒤에 周知著名商標에서 說明키로 한다.

㉚ 商品의 品質을 誤認케 하거나 需要者를 欺瞞할 念慮가 있는 商標(商標法第9條1項11號)

㉚ 商標는 商品自體나 그 品質을 誤認하게 되면 品質保證機能을 喪失하므로 商標의 構成要素와 使用할 指定商品의 關係를 볼때 그 原來의 商品을 다른 商品으로 混同케 하거나 商品의 本質的인 品質과 全然다른 더 좋은 品質 또는 아주 나쁜品質等을 지녔다고 需要者가 잘못認識할 程度의 「商品의 品質을 誤認」케 하는 念慮가 있는 商標는 登錄을 認定하지 아니한다. 이런 경우를 보면 감기약에 알려진 「아스피린」 商標를 消化濟藥品에 使用하게 될때 商品自體의 混同을 일으키는 것 이라든가 디자인도 나쁘고 纖維도 저질품인 模倣製品의 衣類에다 「베에르가르핑」이라는 商標를 붙여 一流商品으로 보도록 品質을 誤認케 하는 것等이다.

㉛ 商標를 使用할 商品의 生産地를 誤認하도록 出處를 混同케 하거나 國產品을 外國商品으로 誤認할 念慮가 있어 「需要者를 欺瞞」하는 商標는 登錄을 認定하지 아니한다. 이런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高유의 纖維系統의 모시에 있어서 어느 地域에서 生産된지도 알지 못하는 삼베 정도의 製品에다 「한산모시」라는 商標를 使用했을때 産地를 誤認케 하거나 國內商品인 가방에다 國語併記도 없이 英文으로 「DIEOL」이라는 造語商標 또는 外國商標인 Dior등을 그대로 使用하여 外國商品으로 認識케 하므로써 需要者들을 欺瞞하는 경우 등이다.

㉔ 商標을 使用하는 「商品의 品質을 오인」한다 함은 商品의 品質의 오인과 商品자체의 오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商品의 品質의 오인」은 그 品質이 그 商品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느냐 아니하느냐를 불문하고 그 商品이 갖는 品質로서 일반 需要者에게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때를 말하고 「商品의 오인」은 指定商品과의 관계에서 일반 需要者에게 類似한 商品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때를 말하며 「需要者를 기만한다」 함은 指定商品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登錄商標를 模倣하여 自己商標로 登錄出願 또는 登錄한 것 같이 하거나 國內商品을 外國商品으로 혼동케하여 需要者에게 商品出處의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需要者를 속이는 것을 말한다.

㉕ 商標의 指定商品과의 관계에서 商品의 오인과 기만을 할 우려가 있는 商標에 대하여 거절이유의 통지를 한 때에 있어 보정에 의하여 商品의 오인과 기만을 하지 아니하는 指定商品으로 감축하였을 때에는 出願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인정을 하고 있다.

㉖ 商標를 使用할 指定商品과의 관계에서 商品의 오인과 기만을 할 우려가 있는 商標에 대하여 거절이유의 통지를 한 경우에 있어 出願書에 첨부된 商標를 商品의 오인과 기만을 아니하도록 삭제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 보정한 부분이 단순한 부기 정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며 出願의 요지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拒絕하여 認定하지 아니한다.

㉗ 外國文字 商標에 있어서 그 품의 國文字 병행표시의 보정은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하며 商品의 오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 병행된 文字商標에 있어서 그 어느 하나의 文字를 삭제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㉘ 商品명칭을 결합하여 出願한 商標에 있어서 그 商品名稱과 指定商品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登錄을 認定하지 아니한다.

㉙ 商標중 「特許」「實用新案」「意匠」「KS」「○○博覽會 ××賞受賞」등 商品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文字가 결합되었을 때에 이를 삭제하는 보정을 하던 인정하고 그러하지 않을 때에는 認定하지 아니한다.

⑫ 不登錄事由의 適用과 判斷時點

㉚ 著名한 他人의 姓名, 名稱等(商標法第9條1項6號)과 需要者에게 顯著하게 認識되어 있는 周知商標(第1

項9號) 그리고 他人의 商品과 營業의 混同을 이르는 著名商標(第1項10號)의 規定은 “商標登錄出願時”에 그 內容이 該當되지 아니하면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商標法第9條2項).

㉛ 他人의 登錄商標와 同一類似한 商標(第1項7號)와 商標權의 消滅 또는 無效審決確定日로부터 1년이 經過하지 아니한 出願商標(第1項8號)의 規定은 商標出願時에 그 內容이 該當되는 것에 대하여 適用한다(商標法第9條3項).

㉜ 需要者에게 顯著하게 認識되어 있는 周知商標(第1項9號)와 先出願主義(商標法第13條)規定에 違反하므로서 登錄無效審決이 確定되었을 경우에 正當한 出願者가 그 商標를 出願할 때에는 無效確定 審決日로부터 1년이 經過한後가 아닌 1年以內라도 登錄을 認定하는 것으로 解釋된다(商標法第9條2項4號).

㉝ 商標登錄의 取消事由인 他人의 使用默認(商標法第45條1項1號) 또는 故意로 登錄商標를 使用하게 하거나(同45條1項3號) 商標를 1年以上 不使用(同45條1項3號) 하였을 때 그리고 團體標章을 團體員이 違反하여 使用하는 것을 默認하는 것(同45條1項6號)과 團體標章의 不法變更으로 因하여 出處나 品質等을 誤認케 하는(同45條1項7號) 理由로 取消審決이나 判決이 確定될 경우 그날로부터 3년이 經過한 後에야 原來登錄받았던 商標權者나 그 商標를 使用한 他人이 消滅한 商標를 다시 出願登錄받을 수 있다(商標法第9條5項).

※ 以上 說明한 規定以外의 商標法第9條 1項에 該當되는 不登錄事由의 適用時點은 商標登錄査定時에 判斷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2. 商標와 商品의 同一類似

(1) 概要

商標는 正當한 出願者에게 登錄을 認定하고 登錄權者에게 獨占排他權을 부여하여 他人이 그 同一類似한 商標와 商品에 使用하지 못하게 禁止 함으로서 權利者를 保護하는 私益을 圖謀하고 있다.

또한 商標機能인 商品出處의 誤認混同을 防止하기 위하여 이미 登錄된 商標와 同一類似한 商標를 그 商標의 指定商品과 同一類似한 商品에 使用하기 위한 後出願商標는 登錄을 認定하지 아니하며 만일, 이런 商標의 登錄을 認定한다면 需要者들에게 商品에 대한 誤認과 混同을 일으키게 하고 商標使用者는 業務上 信

用을 維持할 수 없게되어 流通秩序의 혼란을 가져와 商標制度에 反하게 된다. 따라서 商標法에서는 “先出願에 의한 他人의 登錄商標와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로서 그 登錄商標의 指定商品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品에 使用하는 商標”(商標法第9條1項7號)를 不登錄事由로 定하고 있으며 1商標 1出願主義(商標法第11條)와 商標登錄의 先願主義(商標法第13條), 登錄商標 使用에 대한 侵害行爲(商標法第36條1, 2項)와 其他 商標登錄의 取消 또는 無效事由에 있어서 商標와 商品의 同一 類似 與否 概念이 該心的인 役割을 하고 있다.

(2) 商標의 同一 類似

가. 商標의 同一

① 「商標의 同一」이라 함은 記號, 文字, 圖形, 이들의 結合體인 商標의 構成을 比較할때 本質的으로 두商標가 相互一致함을 말한다.

② 이 同一商標는 肉眼으로 볼때 그 構成이 相互 같은 商標인 것이며 別로 차이가 없는 크기나 극히 섬세한 部分과 色彩까지를 嚴密히 分析하여 同一 與否를 判斷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同一商標의 概念은 去來社會의 通念上 一般需要者들이 보는 觀點에서 同一하다고 認識되는 商標라던 이는 同一한 商標로 認定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③ 이런 경우 文字商標에 있어서 “한가람”과 “한가람”의 二商標는 全體가 同一하다고 보며 二商標가 소리는 發音인 「稱呼」만 同一(개나리=개나리)한 경우와 外部모양인 「外觀」만 同一(☞=☞)한 경우 그리고 그 뜻을 意味하는 「觀念」이 同一(“말머리”文字=“말머리圖形”)한 경우 또는 稱呼, 外觀, 觀念 全體가 同一한 경우 등이 있다.

④ 同一商標는 아니나 이에 가까운 「同一性」이 있는 商標라 함은 商標의 構成이 完全히 一致하지는 않으나 需要者들이 볼 때 同一한 것처럼 混同할 程度의 商標를 말하며 文字商標에 있어서 縱書와 橫書等의 差異로서 嚴格한 意味로는 同一商標가 아닌 類似商標라고 할 수 있다.

나. 商標의 類似

① 意 義

① 「商標의 類似」라 함은 商標의 構成을 對比 觀察할 때 二商標가 同一하지 않고 稱呼, 外觀, 觀念이나 이들을 全體的으로 볼 경우 去來上 一般需要者들로 하

여금 商品의 出處와 品質의 混同을 일으킬 程度로 近似한 商標를 말하며 近似한 商標는 서로 “달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달아있기 때문에 使用에 따라 商品出處의 混同을 일으키는 것”도 포함된다.

② 商標는 法으로 權利者를 保護하며 그 效力範圍에 있어서 登錄된 同一商標뿐만 아니라 類似한 商標까지도 他人의 使用를 禁止하여 이를 使用하면 侵害行爲로 規定하고 있는가 하면 他人의 商標登錄出願時에도 類似한 商標까지 拒絕理由로 採擇하고 있음은 商標를 使用한 商品의 誤認, 混同을 防止하려는 商標制度의 目的을 達成하고 去來社會에서 商品의 品質이나 出處의 混同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範圍를 認識하기 위하여 類似概念을 正確히 파악하는데 그 實益이 있다.

② 類似의 모습

㉠ 稱號類似

「稱呼類似」라 함은 사람의 聽覺을 通하여 去來者間에 商標를 呼稱하는 發音이 類似하기 때문에 商品의 誤認混同이 될 念慮가 있는 類似商標를 말한다.

外觀이 다르거나 觀念이 달라도 呼稱되는 發音이 近似하면 稱呼가 類似한 것이고 이 때의 判斷은 商標로부터 自然히 나오는 가장 부르기 쉬운 呼稱에 의하여 判斷하며 이 稱呼는 商標全體에 의해서 불리우는 경우와 注意를 끌 수 있는 要部 또는 附記의인 部分에 의하여 다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稱呼類似 商標를 살펴보면 千年과 天然, TVC와 TBC, PQR과 PQL은 相互 類似하다고 볼 수 있다. 大法院判例에서는 MAGICLOTH와 MAGIC(81.7.7 判決), 메락스와 MAALOX(81.7.7 判決), Sunrex와 Sun FLEX(81.9.22 判決)는 稱呼가 類似하다고 判決하였다. <계속> <끝>

零細發明家를 돕습니다

大韓辨理士會에서는 국민자가 發明·考案을 하여 이를 出願하고자 할 때 당회소속 辨理士가 무보수로 受任하여 모든 節次를 수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자 發明家 여러분께서는 大韓辨理士會를 많이 利用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① 邑·面·洞長이 發行하는 영세 생활보호대상자 증명 2통

② 發明 考案의 要旨說明書 2통 (도면포함)

※자세한 사항은 大韓辨理士會 (567-3068·568-8517)로 問議바랍니다.